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50444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7. 2.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806,0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806,0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7731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채권을 최종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3. 'C은 원고에게 2,813,519원 및 그중 708,70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2015. 2. 16.)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3. 3.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은 2022. 2. 15. 기준으로 3,806,091원이다.

나. 1) C의 어머니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2. 20.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F, 피고, C은 망인의 유일한 적극적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 C이 각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1. G 앞으로 2019.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2017. 1. 1. 기준 1억 4,100만 원, 2022. 1. 1. 기준 1억 2,700만 원이다.

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1/3)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비롯하여 H 유한회사(이하 'H'라 한다)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H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3623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7,706,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67,70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15.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해행위소송'이라 한다).

1. 피고는 2019. 1. 15.까지 H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1.항 기재 돈을 H에게 지급하는 경우, H는 C에 대한 양수금 청구(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56808)를 포기하고, 그 즉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657)을 취하하며,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H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1/3)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C에 대한 2022. 2. 15. 기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인 3,806,0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6,0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을 모시고 살던 집으로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일단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향후 지분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 반영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 가액은 약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관련 사해행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H에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여 돈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반환하여야 할 돈은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C은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인 F 및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1/3)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악의 역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C와 피고가 형제 사이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1억 2,7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련 사해행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H에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42,333,333원(= 1억 2,700만 원 $\times$ 1/3,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에서 피고가 H에 지급한 2,8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 3,806,091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 3,806,0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3,806,0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가액배상범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망인의 소극적 상속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관련 사해행위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관련 사해행위소송의 당사자로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범위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

별지

목 록

1. [토지] 부산 사상구 1 대 206㎡

2. [건물] 부산 사상구 1

[도로명주소] 부산 사상구 1

조표K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110.44㎡

2층 74.24㎡. 끝.

